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立法例 중에는 監督業務從事者 등의 守秘義務를 規定한 것이 있다(스웨덴, 프랑스).³²⁾ 試案도 이러한 취지에서 主務官廳의 長을 위시하여 누구든지 個人情報에 관한 秘密을 준수하도록 하였다(案제25조).

제17조[체신부장관의 권한]

(1) 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개인정보처리의 기준설정
2. 등록부예의 등록 및 관리
3. 개인정보처리사항의 열람부예의 기재 및 그 열람제공과 관보예의 게재
4. 이 법의 운용상황에 관한 대통령 및 국회에의 보고
5. 개인정보처리에 관련된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체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처리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條文解說 및 關聯問題

[解 說] 試案은 個人情報規制行政의 초기부터 臬부즈만식의 專擔總括機關을 設置하여 엄격히 規制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不作用과 과다한 豫算上의 支出 등을 감안하여 편의상 情報通信業務의 主務部署인 遞信部長官으로 하여금 이 법의 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業務를 管掌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情報處理機關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總括業務를 總務處長官 또는 監査院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으나 遞信部長官을 總括機關으로 한 이유는 政府組織業務分掌上 情報通信業務를 관장하고 있고 또한 현재까지 關係法 筭에 따라 당해 業務를 推進하고 있는 遞信部長官이 總括함이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2) 스웨덴 제19조; 프랑스 제12조 등 참조.

제18조[통보 및 보고]

- (1) 주무관청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 등의 결과와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기관 또는 주무관청의 장이 행한 정보당사자의 청구의 접수·처리결과를 매월 체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장의 통보사항과 체신부장관이 행한 업무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條文解說 및 關聯問題

[解 說] 本條는 이 법의 운용사항 전반을 國政의 最高責任者인 大統領에게 報告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行政業務遂行 등으로 부터 個人情報를 保護하는 것이 國家的 次元의 事業임을 國民에게 확인시킴과 동시에 主務官廳과 遞信部長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키도록 하고, 아울러 立法府인 國會에 定期的으로 報告하게 하여 프라이버시保護問題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認識시키고 후속입법을 促求하는 데에 주된 意義가 있다.

[立法例] 議會에의 報告義務를 規定한 立法例로는 미국(제552조의2 제15항),³³⁾ 서독(제19조2항), 영국(제36조5항) 및 프랑스(제23조1항) 등이 있고, 大統領(政府)에의 報告를 義務化한 立法例로는 서독(제19조2항)과 프랑스(제23조1항)가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首相에 대한 總務廳長官의 意見陳述權限을 規定하고 있다(제22조). 아울러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 報告書를 公表하도록 하고 있다(제23조 1항).

제19조[행정심판]

민간정보처리기관은 주무관청의 장이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한 명령과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거부 또는 승인취소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33) 法律에는 大統領이 年次報告書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 작성업무는 行政管理豫算廳(OMB)이 한다.

條文解説 및 關聯問題

[解 說] 情報시스템의 設置와 기타 情報處理에 대하여 法的인 規制를 가하는 이상, 法的 合理的인 運用을 위하여 情報處理者 또는 管理者에게 무리하고 불합리한 명령·결정이나 규제에 대한 異議申請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本條는 民間 情報處理機關으로 하여금 主務官廳의 長이 發한 是正命令·中止命令과 個人情報의 國外移轉에 대한 承認의 拒否와 承認의 取消가 違法·不當한 경우에 主務官廳의 長을 상대로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國家行政機關 등 公共機關은 그 본질상 上級機關의 명령이나 지시에 복종해야 하므로 本條에 의하여 行政審判을 請求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立法例] 情報處理者의 異議申請權을 명문화한 立法例로는 영국법이 있다(제13조 및 제14조).

제 3 장 정보당사자의 관리

제20조 [정보처리기관에 대한 권리]

- (1) 정보당사자는 열람부 또는 관보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정보처리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관한 질의
 2. 정보처리기관이 보유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청구
 3. 정보처리기관이 보유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그 본래의 이용·보유의 목적과 기간을 일탈하여 처리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정정 또는 말소를 청구하거나 당해 개인정보의 처리중지 또는 폐기의 청구

條文解説 및 關聯問題

[解 說] 情報當事者는 閱覽簿 또는 官報에 게재된 個人情報에 한하여 各號의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立法例] 積極的 意味의 프라이버시權은 情報處理의 적절한 規制외에 情報當事者

의 自己情報에의 積極적인 接近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實現을 기대할 수 있는바, 各國의 立法例는 다양한 類型의 情報當事者의 權利를 認定하고 있다. 立法例上的 權利는, 1) 情報處理가 자기 자신과 관련된 個人情報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하여 당해 情報處理者에게 問疑하거나 通報를 받을 權利(프랑스, 영국, 미국),³⁴⁾ 2) 本人에 관계된 個人情報를 閱覽하거나 寫本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모든 立法例),³⁵⁾ 3) 閱覽의 결과 本人에 관련된 個人情報가 부정확·불완전·애매모호 기타 誤判의 소지가 있거나 保有期間이 경과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情報의 訂正·補完, 處理中止·封印, 抹消, 그리고 解明을 요구할 權利 등으로 類型化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세번째의 權利에 대해서 立法例 중에는 그것을 否認하는 것도 있으나(스웨덴), 대부분의 立法例는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認定程度에 있어서는 1) 訂正請求權만을 認定하는 것과(미국, 일본) 2) 訂正 및 抹消請求權을 認定하는 것(영국), 3) 訂正 및 解明請求權을 認定하는 것(프랑스), 그리고 4) 訂正·處理中止 및 抹消請求權을 認定하는 것(서독)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³⁶⁾ 試案에서는 外國立法例에 규정된 情報當事者의 權利를 대부분 채택하여 폭넓게 認定하였다.

(2) 정보처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3자의 우월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2.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그 밖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통계기록의 작성 및 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로서 그 결과가 정보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다른 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34) 프랑스 제34조; 영국 제21조1항1호; 미국 제552조의2 제5항3호 등 참조. 다만, 미국은 個人의 權利保障形式이 아니라 行政機關의 義務形式으로 규정하고 있다.

35) 미국 제552조의2 제4항1호; 스웨덴 제10조1항; 서독 제4조1호, 제13조1항, 제26조 및 제34조; 프랑스 제35조; 영국 제21조1항 2호; 일본 제13조 등 참조.

36) 미국 제552조의2 제4항2호; 일본 제17조; 영국 제24조; 프랑스 제36조; 서독 제4조2호, 3호 및 4호, 제14조, 제27조, 제35조 등 참조. 이 중에서 특히, 프랑스法은 이러한 諸權利가 請求된 경우에 그 原因發生의 立證責任을 情報處理部署에 과하고 있다.

4. 각종 시험, 자격 등의 심사 또는 보상금이나 급여 등의 산정 및 평가에 관한 사무의 적절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개인정보가 제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사실을 등록부에 등록한 경우
6. 동일한 문서에 대하여 당해 정보당사자가 1년 이내에 동일한 청구등을 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개인정보가 처리개시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條文解説 및 關聯問題

[解 說]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情報當事者가 請求를 한 경우에 情報處理機關은 당해 請求가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請求의 履行을 拒否할 수 있다. 情報當事者의 請求를 拒否하는 경우에 情報處理機關은 그 근거법규 및 취지를 명시하여 申請書를 送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案제21조 제3항). 그러나 各號의 경우에 해당하는 個人情報라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申告例外事由가 없는 한 申告·登錄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本項은 情報當事者의 閱覽請求 등을 認定함으로써 보다 중요한 다른 利益과 충돌하기 때문에 두었는데, 실제 立法에 있어서 이러한 權利制限事由는 개별적으로 좀더 신중히 檢討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立法例] 接近權制限事由의 설정은 各國의 現實與件과 立法技術의 차원에서 결정될 문제로서, 그것들을 類型化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主要 立法例別 情報當事者의 權利行使制限事由] <表 IV> 참조.

제21조[권리행사절차 등]

- (1)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등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당사자 본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행정기관(이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거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정보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3. 청구의 종류 및 청구내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條文解説 및 關聯問題

[解 說]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請求는 情報當事者 또는 그 代理人이 관할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行政機關을 경유하여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權限없는 者가 本條에 의하여 閱覽請求 등을 행하여 他人의 個人情報를 開示받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案제29조 제5호). 그리고 大統領令으로 行政機關을 정하는 경우에는 情報當事者의 時間·距離上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法律에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請求權의 行使節次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關聯問題] 無能力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法定代理人에 관한 明文規定을 둔 立法例로는 미국, 일본 등이 있다.³⁷⁾

- (2)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적격여부와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만을 심사한 후 이를 갖춘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서를 정보처리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條文解説 및 關聯問題

[解 說] 本項은 情報當事者의 權利行使에 따른 時間·距離上의 부담을 극소화하고 申請人의 便宜를 고려하여 申請場所를 관할 市·郡·區廳 등으로 통일시킨 것

37) 미국 제552조의2 제8항; 일본 제13조2항 등 참조.

인 만큼, 申請書를 접수받은 市·郡·區廳은 申請人이 情報當事者 本人인지 또는 權限있는 代理人인지를 확인하고 申請書의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 形式的 要件만을 심사한 후 필요한 사항이 갖추어졌으면 지체없이 당해 請求를 接受·處理할 情報處理機關에 송부하여야 한다. 申請書를 접수함에 있어서 市·郡·區廳의 擔當者는 個人的 秘密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實體的인 內容에 대해서는 審査할 수 없으며, 그 業務遂行上 知得한 個人情報를 利用 또는 漏泄한 경우에는 처벌된다(案제28조).

- (3) 정보처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법규 및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條文解說 및 關聯問題

[解 說] 個人情報의 閱覽 등을 請求받은 情報處理機關은 申請書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請求에 대한 決定을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立法例] 請求權의 接受·處理期間에 관해서는 미국(제552조의2 제4항2호 및 3호), 영국(제21조6항), 일본(제15조) 등이 규정하고 있다.

- (4) 정보처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열람청구인 경우에는 열람일시와 열람장소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신청인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條文解說 및 關聯問題

[解 說] 閱覽請求에 대하여 情報處理機關은 申請人의 時間·距離上의 便宜를 충분히 고려하여 閱覽日時 및 場所를 書面通知하여야 한다.

- (5) 정보처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아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당사자의 청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타인의 명백한 동

의가 없는 한 그 청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실의 생략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타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공되어 질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條文解說 및 關聯問題

[解 說] 情報當事者의 閱覽 또는 寫本交付請求를 認定함으로써 他人의 個人情報가 누설되는 경우에 당해 他人의 同意가 없는 한 情報處理機關은 당해 請求를 拒否하여야 한다. 그러나 他人의 個人情報를 開示하지 아니할 수 있는 方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며, 情報處理機關은 이 규정을 惡用하거나 濫用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情報當事者의 請求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案 제15조 제1항).

제22조[의무이행심판의 청구]

정보당사자는 제3조 제1호와 제2호의 정보처리기관이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거부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條文解說 및 關聯問題

[解 說] 公共의 情報處理機關이 情報當事者의 請求를 拒否하거나 不完全하게 履行한 경우에 情報當事者는 行政審判法에 따라 義務履行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立法例] 情報當事者의 異議申請權을 認定한 立法例로는 미국(제552조의2 제4항3호), 영국(제24조), 프랑스(제21조1항6호) 및 일본(제20조) 등이 있다.

제23조[조정신청]

- (1) 정보당사자는 민간정보처리기관이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거부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주무관청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3) 신청인과 민간정보처리기관은 조정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조정의 결정은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확정된다.

條文解説 및 關聯問題

[解 說] 情報當事者의 請求를 民間情報處理機關이 부당하게 拒否하거나 不完全하게 履行한 경우에 情報當事者는 主務官廳의 長에게 調停을 申請할 수 있으며, 主務官廳의 長은 30일 이내에 調停決定을 하여야 한다. 調停決定에 불복하는 申請人과 民間情報處理機關은 당해 決定을 通知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으며, 調停決定은 그 期間內에 行政審判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된다. 本條는 民事節次를 통한 救濟에 비하여 個人의 自己情報에 대한 權利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關聯問題] 제22조 및 本條 등에 의한 行政審判, 調停 및 기타의 訴訟事件이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個人情報의 訂正 등을 內容으로 한 것인 경우에 당해 個人情報의 正當·不當이 확정될 때까지 당해 個人情報의 處理를 中斷하도록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서독법이 明文規定을 두고 있으나(제14조2항, 제27조2항 및 제35조2항), 試案에 있어서는 個人情報의 處理를 中斷시켜 (行政)業務遂行을 저해할 목적으로 訂正請求 등이 惡意的으로 濫發될 危險性을 고려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제24조 [수수료]

정보당사자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條文解説 및 關聯問題

[解 說] 大統領令으로 手數料를 정하는 경우에는 郵送料 등을 포함하여 최소한의 實費에 해당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算定할 것이 요망된다.

[立法例] 적절한 請求費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立法例³⁸⁾가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스웨덴은 請求者에 대한 無料通知를 原則으로 하고 있다.

[關聯問題] 手數料問題에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民間情報處理機關에 대한 請求手數料에 있어서 특히 그 請求로 인하여 民間情報處理機關이 부담하게 되는 追加經費를 고려하는 문제.
- 2) 제20조 제1항 제3호의 權利를 內容으로 한 請求가 情報處理機關의 履行, 訴訟, 行政審判, 調停 등을 통하여 認定된 경우에 당해 請求로 인하여 情報當事者가 부담한 手數料의 返還과 訂正된 個人情報의 寫本을 無料로 交付하는 문제.³⁹⁾

제 4 장 보 칙

제25조 [비밀준수의무]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條文解説 및 關聯問題

[解 說] 個人情報를 직접·간접으로 處理·管理하는 者 또는 그 責任者에 대하여 情報保持業務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외에도 主務官廳의 長, 遞信部長官 및 諮問委員會 委員과 이들의 業務를 補助하는 者 등 이 법에 의하여 個人情報의 處理와 관련된 業務를 수행하는 者는 秘密遵守의 義務를 지며, 違反時에는 처벌한다(案제28조).

[立法例] 情報保持義務를 특별히 명문으로 규정한 立法例로는 서독, 스웨덴, 일본 및 프랑스 등이 있는데,⁴⁰⁾ 스웨덴은 情報處理者의 守秘義務 외에 데이터檢査院

38) 미국 제552조의2 제6항5호; 영국 제21조2항; 프랑스 제35조2항; 서독 제13조4항, 제26조3항 및 제34조3항; 스웨덴 제10조; 일본 제16조1항 등 참조.

39) 이에 관한 外國 立法例로는 프랑스 제36조2항 및 4항; 서독 제26조3항 및 제43조3항 참조.

40) 서독 제5조; 스웨덴 제13조 및 제19조; 일본 제12조; 프랑스 제12조 등 참조.

従事者の 守秘義務도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情報處理者의 秘密保持義務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情報處理自由委員會 委員과 그 職員의 守秘義務를 규정하고 있다.

제26조 [주의규정]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이 법의 규정에 준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장은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條文解説 및 關聯問題

[解 說] 國家行政機關 등 公的部門과 일부 民間部門만을 規制함으로써 본래 이 법이 의도한 個人情報의 保護를 통한 個人的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保障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私企業 등에 의한 個人的 프라이버시侵害可能性과 危險性은 항상 存在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團體일지라도 個人情報를 處理하는 경우에는 個人情報의 保護를 위한 이 법의 規定(특히 安全確保措置, 直接蒐集原則, 記錄의 制限 등)에 준하는 적절한 措置를 講究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主務官廳의 長은 그러한 措置努力을 장려하고 支援하여야 한다.

제27조 [대통령령에의 위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장 벌 칙

제28조 [벌칙]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2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민간정보처리기관
4.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행정심판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행하여 개인정보를 개시받은 자

條文解説 및 關聯問題

[解 說] 本條에서는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히 광범위하게 刑事處罰을 認定하였다. 그러나 아직 個人情報處理에 관한 基準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現狀下에서 지나친 規制·處罰로 인한 逆效果(公務員의 業務忌避·能率低減 등)를 감안한다면 初期段階에 불과한 현재로서는 刑事的인 性格이 강한 제2호와 제5호만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직하다(제2안 참조).

[立法例] 各國의 立法例는 프라이버시保護法違反行爲에 대한 罰則規定을 두고 있는데(캐나다 제외),⁴¹⁾ 대부분 自由刑과 罰金刑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은 罰金刑만을 認定하고 있다. 法違反行爲의 類型과 刑量 등은 各國의 情報處理에 대한 規制內容 및 他刑罰法規 등과 관련하여 決定될 문제이다.

[關聯問題] 保護法 違反者에 대한 罰則의 부과는 豫防的 측면에서 간접적으로나마 法律의 遵守를 강제하여 立法의 實效性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處罰程度의 선택은 다른 法規와 衡平을 이루어야 한다. 이 외에 罰則問題와 관련하여 檢討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41) 미국 제552조의2 제9항; 영국 제19조; 프랑스 제41조 내지 제44조; 서독 제41조 및 제42조; 스웨덴 제20조, 제21조 및 제24조; 일본 제25조 등 참조.

- 1) 情報當事者와 情報處理者 이외의 權限없는 제3자가 不法的인 방법으로 情報處理裝置에 接近하여 他人의 個人情報를 훔치거나 조작한 경우 또는 情報處理者와 제3자 혹은 情報當事者와 제3자가 共謀하여 不法한 방법으로 個人情報를 提供, 入收, 造作 또는 惡用한 경우의 處罰問題(컴퓨터犯罪防止立法에서 고려할 문제).
- 2) 情報處理機關 내부의 上級者에 의한 情報處理過程에의 不法적인 干渉에 대비한 機關 및 그 加擔의 處罰問題.⁴²⁾
- 3) 法人 등 民間部門의 經濟的 自由를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罰則緩和問題.
- 4) 個人情報의 不法적인 國外處理에 대비한 國際司法共助 차원에서의 對策講究와 기타 國際的 協助問題.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1) 이 법 시행 이전에 처리된 개인정보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2)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당사자의 권리는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

42) 이에 관한 立法例로는 영국법 제20조 참조.

2. 檢討要望事項

(1) 民事救濟

保護法이 비록 積極的 意味의 프라이버시概念에 의하여 情報處理의 規制와 個人의 自己情報에의 接近을 積極的으로 保障한다고 해서 침해의 危險性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반 法的措置에도 불구하고 情報處理者의 不法·부당한 情報處理에 의하여 個人의 私生活이 침해된 경우에는 비록 事後的으로나마 民事的인 차원에서 救濟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다만, 試案에서는 이러한 民事救濟는 프라이버시保護立法이 明文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民事法上의 一般條項에 의하여 救濟가 가능하다고 보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外國의 프라이버시保護立法例 중 스웨덴, 미국, 영국 등은 民事救濟를 특별히 명문화하고 있는데,⁴³⁾ 특히 미국의 프라이버시法은 原告 勝訴시 請求權의 拒絶·否認으로 당해 個人이 입은 實損害額(최저 1,000달러 이상으로 제한)과 訴訟費用 및 합리적인 辯護士費用까지 國家가 賠償할 것을 상세히 規定하고 있다.

(2) 國有 個人別住所파일의 設置

이미 一般에 노출되고 個人的인 秘密을 침해할 危險性이 없는 個人에 관한 情報 또는 記錄을 國家가 통일된 情報파일에 기록하여 活用함으로써, 중복된 情報蒐集으로부터 業務能率의 低減을 止揚하고 나아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機關에 의한 個人情報의 산발적인 蒐集·利用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不正確한 情報의 保有 또는 誤判의 소지를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問題와 관련하여 스웨덴法은 1981년에 「國有 個人別住所파일」의 設置에 관한 規定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제26조 내지 제28조). 스웨덴法에 따르면, 다른 個人情

43) 民事救濟에 관한 外國 立法例로는 미국 제552조의2 제7항; 스웨덴 제23조; 영국 제22조 및 제23조 등 참조. 서독의 경우에는 聯邦法에는 규정이 없으나 州法 중에는 明文規定을 둔 것도 있다(Hessen, Bayern, Niedersachsen, Rheinland,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州法 등).

報과일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의 現在性的 維持·補完·確認과 데이터 一般의 確認·補完 및 個人情報의 標本을 蒐集할 목적으로 自動情報處理에 의해 관리되는 「國有 個人別住所과일」을 설치하도록 하고(제26조), 당해 과일에 기록될 資料의 蒐集은 국민등록·소득세평가·자산세평가에 利用되는 國家의 個人情報과일로부터 하도록 하면서 특별한 住所에 대해서는 우편제도를 통하여 蒐集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7조). 그리고 제28조에서는 個人데이터의 「國有 個人別住所과일」에의 照會 등 그 과일의 利用·活用に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專門的 審判機關의 設置

個人情報의 침해가 問題된 경우에 一般法院은 경험미숙·전문성결여등으로 인하여 부적합할 수도 있으므로, 專門的인 審判機關을 설치하여 이에 관한 爭訟을 취급하게 하는 問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行政機關 등에 의한 情報의 蒐集·利用은 당해 機關의 적정한 업무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一般法院이 지나치게 行政機關의 업무상 情報活動을 制約하는 경우에 行政府와 司法府간의 葛藤問題를 야기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司法府의 獨立이 완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實效성을 기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問題와 관련하여, 英國法은 데이터保護審判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제3조). 이 審判所는 데이터利用者의 利益을 대표하는 者와 情報當事者의 利益을 대표하는 者 중에서 1)大法官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임명한 議長, 2)大法官이 그 數를 결정하여 검찰총장과 협의한 후 임명한 副議長, 그리고 3)擔當長官이 그 數를 정하여 임명한 委員으로 구성되며, 그 構成員은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法廷辯護士·檢事·事務辯護士이어야 되도록 하고 있다.

(4) 立證責任의 轉換

個人情報의 正當·不當에 관한 行政審判·調停·訴訟 등에 있어서는 情報處理業務의 전문성·다양성 때문에 一般人이 그 구체적 內容을 모두 적시하여 立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情報處理機關이 處理하는 個人情報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경우에는

情報處理機關으로 하여금 당해 異議提起가 이유없음을 立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立法例로서 프랑스법은, 情報處理機關에 의한 個人情報處理에 대하여 情報當事者의 異議가 있는 때에는 문제된 情報를 情報當事者의 同意에 의하여 蒐集하였음을 立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個人의 接近權을 접수·처리할 部署가 立證責任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제36조3항).

(5) 情報公開法 또는 秘密保護法의 制定

私生活保護法의 制定에 앞서서 또는 그것과 並行하여 情報公開法 또는 秘密保護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있는 바, 이 問題의 慎重한 檢討와 積極的인 受容이 필요하다고 본다. 私生活保護立法의 制定 이전에 情報公開法 또는 秘密保護法이 制定된 대표적인 예로는 스웨덴과 미국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情報公開가 憲法上의 原則으로 保障되어 왔으나, 國家機密·私生活의 秘密 등을 保障하기 위하여 1937년에 「公文書請求權의 制限에 관한 法律(The Law on Curtailment of the Right to Demand Official Document)」 즉, 秘密保護法을 制定하여 公文書公開에 대한 例外를 43개 조문으로 확대·명확화·통합정리하고,⁴⁴⁾ 그 이후에 電子情報處理의 발달에 대응하여 個人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法」을 1973년 制定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國民의 「알 權利」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66년에 情報自由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을 制定하고, 그 후 1974년에 프라이버시法(Privacy Act)을 制定하였다.

보건대, 秘密保護法의 制定은 스웨덴의 경우와 같이 情報公開制度가 確立된 이후에 그러한 國政情報의 일반적인 公開로부터 國家機密 등을 保護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論議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서 情報公開法을 制定한다면 그 例外事由로서 情報公開法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情報公開法 制定의 先行問題에 대하여는, 그것이 바람직한 順序라는 데에는 異議가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情報公開法

44) Stanley V. Anderson, "Public Access to Government Files in Sweden", 21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423, 1973.

이 마련된 이후에 私生活保護法이 制定되어야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情報公開法과 私生活保護法이 각기 추구하는 國民의 알 權利와 프라이버시의 權利는 모두 自由民主主義의 確立에 不可缺한 要素로서 그 價値를 서로 比較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최근에 우리 政府가 私生活保護法의 制定은 물론 情報公開法을 制定하겠다는 意志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私生活保護法과 情報公開法은 그 本質上 相互矛盾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실제의 立法에 있어서는 두 利益이 適正線에서 調和되도록 세심한 檢討가 필요할 것이다.

〈表 I〉

主要 立法例別 個人情報處理規制・調整 關聯機關

國 家	機關의 名稱	規 制 領 域	構 成 및 運 營	備 考
스웨덴	데이터檢査院	公共·民間	음부즈만, 獨立운영	
美 國	行政管理豫算廳		연방 行政機關	제 552 조의 2 제 15 항
西 獨	聯邦 데이터 保護擔當官	國 家	大統領 임명	제 17-21 조
	所管 官廳	民 間	연방 行政機關	제 30, 39, 40 조
프랑스	國家情報處理 自由委員會	公共·民間	獨立된 行政機關, 상원의원(2)·국민의 회의원(2)·경제사회 위원회 위원 중 국민 의회가 선출한 자(2) ·국참사원선출의 전 현직구성원(2)·파기 원선출의 전현직구성 원(2)·회계감사원선 출의전현직구성원(2) 국민회의의장과 상원 의장의 추천에 의해 각각 임명된 자(2)· 내각에서 지명된 자 (3)등 17명으로 구성	제 6-13 조
英 國	登 錄 官	公共·民間	女王 임명의 公務員	제 3 조
日 本	總務廳長官	總括機關	行政機關	제 6, 8, 22 조
	個人情報 保有 機關의 長	당해情報 處理機關		

〈表 II〉

主要立法例別 通知・申告・登録事項

立法例	通知・申告・登録事項
西獨	1. 기관의 명칭·상호 2. 소유자, 이사, 지배인, 법정관리인 및 정보처리의 감독을 위임받은 자 3. 주소 4. 업무목적·데이터처리의 목적 5. 자동정보처리설비의 종류 6. 데이터保護受託官의 성명 7. 정보처리자 또는 그 위임에 의하여 기입된 개인정보의 종류 8. 개인정보의 정기적 受領者와 제공데이터의 종류
프랑스	1. 요구서제출자·정보처리결정권자 또는 그 대리인 2. 정보처리의 특징·목적·명칭 3. 정보처리 담당부서 4. 접근권행사부서 및 그 행사를 위해 취한 조치 5. 처리된 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자의 범위 6. 개인정보의 出處·보존기간, 그 정보의 수신인 및 그 범위 7. 정보에의 접근·연락의 형식, 제3자에의 인도 8. 정보 및 정보처리의 안전과 법적으로 보호되는 비밀을 위해 취한 처분 9. 개인정보를 外國에 移轉·送付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英國	1. 데이터이용자의 주소·성명 2. 보유·이용의 목적 3. 데이터이용자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情報源 4. 데이터이용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 5.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國외의 受領國 6. 정보당사자의 청구접수장소
日本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보유기관의 명칭 3. 파일보유의 목적 4. 기록항목 및 기록범위 5. 수집방법 6. 經常的提供處 7. 개인 청구의 受理場所 8. 열람부에 특정항목·특정 개인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9. 본인의 청구가 금지된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그 사실 10. 다른 법률·명령에 의해 정보의 내용이 공개되었거나 개인의 청구에 관한 특별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해당 법률·명령의 명칭 11. 기타 政令으로 정하는 사항
美國	기록시스템設置·變更이 사생활보호, 개인의 인적·물적권리, 당해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미치는 예상, 잠재효과, 헌법상의 연방주의·권력분립주의의 보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당 事實을 聯邦議會와 行政管理豫算廳(OMB)에 事後報告(제 552 조의 2 제 15항)

〈表 III〉

主要立法例別 公示事項

立法例	公示事項
美國	1. 정보시스템의 명칭 및 위치 2. 입력된 개인의 범주 3. 사용자의 범주, 사용목적 4. 기록의 저장·검색·접근통제·보유·처분에 관한 당해 기관의 정책 및 현황 5. 시스템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직위·사무실 주소 6. 시스템에 개인정보가 입력되는 경우에 개인이 요청에 의하여 통지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 7. 시스템내의 개인정보에 개인이 접근하는 방법과 그 내용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통지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
西獨	행정청 등 공공기관은 입력 후 즉시 다음 사항을 官報를 통해 公告하고,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公告된 사항을 通知하여 함(제 12 조 1항).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는 다음 사항이 명시된 目錄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利用하게 해야 함(제 22 조 1항).
英國	1. 情報處理目錄의 설치를 결정하는 법률·규칙 및 신고일자 2. 정보처리목록의 명칭 및 목적 3. 일반인이 열람·정정 등의 접근권을 행사할 部署 4. 記入된 개인정보의 범위와 당해 정보를 전달받을 권한이 있는 자 및 그 범위
日本	1. 데이터利用者の 주소·성명 2. 보유·이용의 목적 3. 데이터이용자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情報源 4. 데이터이용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 5.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國외의 受領國 6. 정보당사자의 청구접수장소
日本	保有機關의 長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個人情報파일簿(열람부)를 作成하여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하며(제 7 조), 總務廳長官은 매년 1회이상 다음 사항을 官報로 公示하여야 함(제 8 조).
日本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보유기관의 명칭 3. 파일보유의 목적 4. 기록항목 및 기록범위 5. 수집방법 6. 經常的提供處 7. 개인 청구의 受理場所 8. 본인의 청구가 부인되는 경우에 그 사실 9. 다른 법률·명령에 의해 정보의 내용이 공개되었거나 개인의 청구에 관한 특별절차가 있는 경우에 그 사실 및 해당 법률·명령의 명칭 10. 기타 政令으로 정하는 사항

〈表 IV〉

主要立法例別 規制 免除・緩和事由

立法例	事由	備考
스웨덴	당사자의 개인정보제공청구에 대한 通知義務를 1년에 1회로 限定	제 10 조 1 항 단서
	법률·정령 기타의 규정에서 특별히 被記錄者에 대한 通知를 禁止하고 있는 개인정보	제 10 조 3 항
美 國	1. CIA가 보유하는 정보시스템 2. 범죄예방·범인체포 등 형사관계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보유하는 것으로서 i) 범인·피의자의 特定을 목적으로 수집되고, 체포·형사처분·선고·복역·석방·보호관찰여부 등을 구성하는 정보, ii) 통보자·수사관의 보고가 포함된 범죄 수사목적의 정보, iii) 체포에서 觀察의 解除까지 형사법의 집행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보고시스템	프라이버시법의 제 규정 중 일부 조항 註)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의 적용을 면제 (제 552 조의 2 제 10 항).
	1. 정보자유법 (FOIA)의 보호대상인 정보시스템 2. 형사관계법 이외의 법률의 집행을 위해 수집한 조사자료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련된 정보 4. 법규에 의하여 통계기록에 이용될 자료 5. 공무원임용·군복무, 비밀취급 등의 적합성 또는 자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집한 조사자료 6. 연방공무원의 임명·승진을 위한 시험자료 7. 군승진 평가자료	당사자에의 제공 근거의 기록, 당사자의 권리, 정보 보유의 제한, 시스템 공시사항 중 일부, 행정규칙의 公布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면제 (제 552 조의 2 제 11 항).

立法例	事由	備考
美 國	接近權 民事訴訟을 위하여 제출한 정보에 대하여는 個人의 접근을 인정하지 아니함	제 552 조의 2 제 4 항 5 호
西 獨 國	官報를 통한 公示의 例外 1. 연방의 안전에 관련되는 한도에서 헌법보호, 연방공안국, 방첩대, 국방장관 관할하의 행정청, 연방형사국, 검찰청, 경찰청 연방재정청, 州財政廳 2. 法定保全規定에 의하여 삭제될 수 있음을 이유로 처리가 중단된 개인정보 3. 다른 법규정 또는 행정규칙에 의하여 관장하여야 할 개인정보파일	행정청등 공공기관의 관보를 통한 公示義務規定의 적용면제 (제 12 조 2 항).
	接近權 1. 보유기관의 합법적인 과제수행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2. 접근권의 인정이 공공의 안전·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연방이나 州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3. 법규정상 또는 본질상 보다 중요한 제 3자의 正當한 이익을 위하여 비밀로 해야 할 경우 4. 접근권의 인정이 연방공안국 등의 관청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될 경우	이 경우에 행정청등 公共機關은 정보당사자에 대한 안내 (접근)를 중단 (제 13 조 3 항).
獨 自 限制	1.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보유기관의 업무목적·목표가 현저히 위태롭게 되고 당사자의 正當한 이익에 반하게 될 경우 2.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공공의 안전·질서가 위태롭거나 연방과 州의 복리에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관할감독청이 확인한 경우 3. 법규정상 또는 본질상 보다 중요한 제 3자의 正當한 이익을 위하여 비밀로 해야 할 경우 4.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情報源으로부터	이 경우에 自主目的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非公共機關의 당사자에 대한 안내 (접근 인정)를 면제 (제 26 조 4 항).

立法例	事由	備考	
西 獨	직접 당해 개인정보가 인출된 경우 5. 법률, 조례 또는 계약상 보관을 이유로 당해 개인정보가 보유된 경우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중요한 제 3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공공의 안전·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聯邦이나 州의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관할감독청이 확인한 경우	他主目的의 非公 共機關의 당사자 에 대한 안내 면 제 (제 34 조 4 항).	
프 랑 스	記載事項의 記載 制 除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관한 事前同意 (의견) 요 구시 당해 개인정보가 국가의 안전·방위 및 공공 의 안전에 관련된 경우에는 所定の 記載事項 (제 19 조 1 항) 을 명시할 수 없음.	제 19 조 3 항
	接近權 制 限	個人的 접근권이 醫療性格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행사되는 경우에 그 정보는 지명된 醫師의 立會 하에서만 당사자에게 제공됨.	제 40 조
英 國	個人 情報 處理 規制의 一般 的 免 除	1.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제 27 조) 2. 급여·연금의 계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정보와 물품의 구매·판매·거래 등 데이터이용자 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계산서 및 거래장부의 작 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제 32 조) 3. 오로지 개인·가족 및 가정생활의 운영에 관 련된 개인정보와 오락용으로 개인이 보유하는 개 인정보 (제 33 조 1 항) 4. 다른 법률이 일반에의 공개를 정하고 있는 개 인정보 (제 34 조 1 항)	등록·감독등 개 인정보의 처리를 규제하는 조항에 대하여 전반적으 로 적용이 면제 됨.

立法例	事由	備考	
英 國	接近權 制 限	1.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제 27 조) 2. 범죄예방·수사, 범인체포·기소, 조세·부과금 의 과세 및 징수를 위한 개인정보 (제 28 조) 3. 정보당사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관한 정 보를 구성하는 개인데이터 (제 29 조) 4. 法定機能 (은행·보험·투자 등 금융업무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의해 부여된 기능 포함) 의 집행을 위한 개인정보로서, 개인의 접근을 인정하면 당해 기능의 적정한 수행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30 조) 5. 법관임용 및 법률직책상의 특권에 관련된 개 인정보 (제 31 조) 6. 급여·연금의 계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 보와 물품의 구매·판매·거래 등 데이터이용자 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계산서 및 거래장부의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제 32 조) 7. i) 오로지 개인·가족 및 가정생활의 운영에 관련된 개인정보와 오락용으로 개인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ii) 법인격 없는 단체가 보유하는 그 단체의 구성원에 관한 개인정보와 데이터이용자 가 당사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보유하는 것으로서 성명·주소 기타 제공에 필요한 사항만 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제 33 조) 8. 다른 법률이 일반에의 공개를 정하고 있는 개 인정보 (제 34 조 1 항)	정보당사자의 자 기 정보에 대한 접근 (통지수령권, 사본청구권, 정정 · 말소청구권, 손 해배상청구권 등) 규정의 적용배제

立法例	事由	備考
英國	9. 각종 시험성적의 결정 또는 그 결과에 관련되는 개인정보 (제 35 조)	
日本	1. 국가안전·외교상비밀 기타 중요한 국가이익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수사, 조세범죄사건의 조사 또는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3. 행정기관의 전·현직 직원의 인사·급여·복리후생에 관한 사항만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시험적인 전자계산기처리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파일 5. 총무청장관에게 통지한 개인정보파일내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그 파일의 보유목적·기록항목·기록범위가 이미 통지된 파일에 관한 사항의 범위내에 있는 것 6. 1년 이내에 폐기될 정보만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7. 자료·물품·금전의 송부 또는 업무상 연락을 위하여 이용하는 정보를 기록한 개인정보파일로서, 상대방의 성명·주소 기타 송부·연락에 필요한 사항만을 기록한 것 8. 자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원이 단독으로 작성하여 그 기관의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개인정보파일 9. 직원이 학술연구목적으로 작성하여 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파일 보유사실의 총무청장관의 事前通知義務의 免除事由 (제 6 조 2 항).

立法例	事由	備考
日本	10. 정보당사자의 수가 政令으로 정하는 數 미만인 개인정보파일로서, 보유기관 이외의 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것 11. 기타 3내지 10의 개인정보파일에 준하는 것으로서 政令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日本	個人情報 情報 파일簿 記載의 一部 免除 보유기관의 장은 파일기록항목의 일부 또는 총무청장관에게 통지사항 중 일부 (〈表II〉5,6참조)를 개인정보파일부 (열람부)에 기재함으로써 파일 보유목적에 관련된 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항목의 일부 또는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 7 조 2 항
日本	個人情報 情報 파일簿 記載의 全部 免除 事由 1. 범죄예방에 관한 사무 2. 국제수사공조에 관한 사무 3. 구류의 집행, 교정 또는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 4. 출입국관리, 난민의 인정 또는 査證에 관한 사무 5.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6. 기타 1내지 5에 준하는 것으로서 政令으로 정하는 사무	각 사무에 사용되는 파일을 파일부에 기재함으로써 그 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때 (제 7 조 3 항)
日本	公示 例外 事由 총무청장관은 보유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시함에 있어서, 제 7 조 2 항에 의한 개인정보파일부내의 기재면제사유와 제 7 조 3 항에 의한 기재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공시할 수 없음.	제 8 조 2 항
日本	情報 1. 학교에서의 성적평가, 입학자선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개인정보파일	

立法例	事由	備考
開示 請求의 禁止 事由	2. 병원·진료소·조산소에서 진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개인정보파일 3. 형사사건관련재판, 검찰관·검찰사무관·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처분,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개인정보파일	제 13 조 1 항 단서
日 個人 情報 開示 免除 事由 本	1. 본인에의 제공이 1) 제 7 조 3 항 1 호 내지 5 호의 사무(전 파일부기재전부면제사유 참조), 2) 범죄수사, 조세범죄사건의 조사 또는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사무, 3) 입회검사·법률상의 조사권행사에 관한 사무, 4)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자격 등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政令으로 정하는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제 3 자로부터 취득된 개인정보로서, 정보의 개시가 보유기관과 당해 제 3 자와의 협력·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경우 3. 정보의 개시가 개인의 생명·신체·재산 기타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 경우에 보유기관의 장은 당사자의 開示請求를 拒否할 수 있음(제 14 조 제 2 항).

註) 一部條項이란 기록개시의 제한(제2항), 개시의 근거기록유지(제3항1호, 2호), 시스템 설치·변경의 공시사항 중 일부(제5항4호), 기록의 정확성등 유지(제5항6호), 수정헌법이 보장한 권리행사방법에 관한 기록유지금지(제5항7호), 시스템관리기준의 설정·담당자에의 지시의무, 안전조치장구의무, 시스템이용의 고지·당사자의 의견제출기회제공의무(제5항9호 내지 11호) 및 형벌규정(제9항)을 말한다.

第 5 章 個人情報의 秘密保護에 관한 法律(試案)

第 1 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법은 行政機關 등에 의한 個人에 관한 情報의 處理에 필요한 事項을 규정함으로써 個人의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보장함과 아울러 情報通信行政業務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운영과 情報通信產業의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案]

第1條[目的] 第1案 第1條와 同

第2條[用語의 定義]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個人情報”라 함은 文書의 內容을 이루는 生存하는 個人에 관한 情報로서 당해 情報에 포함되어 있는 姓名·生年月日 그 밖의 記述, 또는 個人별로 붙인 番號·記號 그 밖의 符號에 의하여 당해 個人의 身元을 識別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그 情報만으로는 識別할 수 없으나 다른 情報과 용이하게 결합함으로써 그것에 의하여 당해 個人을 識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文書”라 함은 手記에 의하여 작성된 文書 및 文書綴(타자기 등 手動式의 裝置 또는 機具를 써서 작성한 文書 및 文書綴을 포함한다. 이하 “手記式 文書”라 한다) 과 電子計算機 및 그 밖의 電子的 自動處理裝置를 써서 일정한 事項을 기록한 磁氣테이프, 磁氣디스크 및 이에 준하는 物體 및 그 集合體(이하 “電子的 自動處理 文書”라 한다)를 말한다.
3. “情報處理”라 함은 情報의 蒐集·記錄·利用·提供·移轉·變換·保有·保存·廢棄 및 이와 유사한 行爲를 말한다.
4. “情報當事者”라 함은 個人情報의 主體인 個人을 말한다. 다만, 外國人은 法務部

長官의 承認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情報當事者로서의 權利를 가진다.

(2) 이 法에서의 主務官廳의 長은 다음 各號의 者가 되며, 主務官廳의 長이 중복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遞信部長官이 조정한다.

1. 大統領 또는 國務總理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당해 機關의 長
2. 第1號 이외의 機關인 경우에는 主務中央行政機關의 長
3.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관하여는 당해 自治團體의 長. 다만, 市·郡·自治區의 경우에는 소관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道知事

[第2案]

第2條 [用語의 定義]

(1)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第1案 第2條 第1項 第1號와 同
2. “文書”라 함은 電子計算機 및 그 밖의 電子的 自動處理裝置를 써서 일정한 事項을 기록한 磁氣테이프, 磁氣디스크 및 이에 준하는 物體 및 그 集合體 (이하 “電子的自動處理文書”라 한다)를 말한다.
3. 第1案 第2條 第1項 第3號와 同
4. 第1案 第2條 第1項 第4號와 同

(2) 第1案 第2條 第2項과 同

第3條 [適用對象]

이 法은 다음 各號의 機關, 法人 그 밖의 團體 및 個人(이하 “情報處理機關”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된다.

1. 國家의 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
2.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및 韓國銀行
3. 第1號와 第2號 이외의 金融·保險·信託 및 이와 유사한 業務를 취급하는 者와 情報處理 또는 情報役務提供을 營業으로 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 (이하 “民間情報處理機關”이라 한다)

[第2案]

第3條 [適用對象]

이 法은 다음 各號의 機關, 法人 그 밖의 團體(이하 “情報處理機關”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된다.

1. 國家의 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
2.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및 韓國銀行

第4條 [諮問委員會의 設置]

- (1) 個人情報處理에 관한 重要事項을 審議하고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소속하에 個人情報處理諮問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2) 委員會의 委員은 個人情報處理業務에 관련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關聯團體의 長 및 情報處理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중에서 國務總理가 任命 또는 委囑한다.
- (3) 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과 그 밖에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案]

第4條 [諮問委員會의 設置] 第1案 第4條와 同

第5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個人情報處理에 관한 事項으로서 이 法 이외의 다른 法律에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規定을 이 法에 優先하여 適用한다.

[第2案]

第5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第1案 第5條와 同

第 2 章 個人情報의 處理

第1節 個人情報處理의 登錄 및 公示

第6條 [個人情報處理의 申告]

- (1) 情報處理機關은 個人情報를 處理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미리 主務官廳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民間情報處理機關은 第1號 내지 第6號와 第9號의 事項만을 主務官廳의 長에게 申告할 수 있다.
1. 당해 個人情報의 處理와 관련되는 事業 또는 文書의 명칭
 2. 情報處理機關의 명칭과 주소
 3. 당해 個人情報處理의 目的과 그 豫想保有期間(蒐集開始의 日字를 포함한다)
 4. 手記式文書 또는 電子的自動處理文書의 구분
 5. 情報當事者의 範圍 및 記錄項目
 6. 主務官廳의 명칭과 주소
 7. 당해 個人情報의 蒐集이 法律의 규정 또는 情報當事者의 同意에 의한 것인지의 구분. 다만, 法律의 規定이 없거나 情報當事者의 同意를 얻기가 어려운 합리적인 事由가 있어서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情報를 蒐集하는 경우에는 그 事由를 명시하여야 한다.
 8. 당해 個人情報의 處理와 관련하여 情報處理機關에게 정기적으로 情報를 提供하거나 提供하려는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
 9. 당해 個人情報를 國外의 다른 國家機關 등에 提供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受領者의 명칭·주소 및 그 취지
 10.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項
- (2) 情報處理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함에 있어서 당해 個人情報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일반에 公表되었거나 公開된 사실인 경우

2. 第2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當事者의 權利가 다른 法律에 의하여 保障되고 있는 경우

(3) 情報處理機關은 個人情報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務와 관련되어 그 情報를 個人情報閱覽簿 또는 官報에 기재하여 일반의 閱覽에 提供하는 것이 당해 事務의 적정한 수행을 현저하게 阻害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백히 하여 그 事項의 기재생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함에 있어서 第1項 第7號 및 第8號의 事項을 생략할 수 있다.

1. 犯罪의 豫防에 관한 事務

2. 出入國管理에 관한 事務

3. 租稅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事務

4. 그 밖에 第1號 내지 第3號의 事務에 준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務

(4) 情報處理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事項에 變更이 있거나 登錄된 個人 情報의 處理를 中止하거나 또는 個人情報를 廢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主務官廳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 2 案]

第6條 [個人情報處理의 申告]

(1) 情報處理機關은 個人情報를 處理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미리 主務官廳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당해 個人情報의 處理와 관련되는 事業 또는 文書의 명칭

2. 情報處理機關의 명칭과 주소

3. 당해 個人情報處理의 目的과 그 豫想保有期間(蒐集開始의 日字를 포함한다)

4. 情報當事者의 範圍 및 記錄項目

5. 主務官廳의 명칭과 주소

6. 당해 個人情報의 蒐集이 法律의 規定 또는 情報當事者의 同意에 의한 것인지의 구분. 다만, 法律의 規定이 없거나 情報當事者의 同意를 얻기가 어려운 합리적인 事由가 있어서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情報를 蒐集하는 경우에는 그

事由를 명시하여야 한다.

7. 당해 個人情報의 處理와 관련하여 情報處理機關에게 정기적으로 情報를 提供하거나 提供하려는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
8. 당해 個人情報를 國外의 다른 國家機關 등에 提供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受領者의 명칭·주소 및 그 취지
9.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項

(2) 情報處理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함에 있어서 당해 個人情報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일반에 公表되었거나 公開된 사실인 경우
2. 第1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當事者의 權利가 다른 法律에 의하여 保障되고 있는 경우

(3) 情報處理機關은 個人情報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務와 관련되어 그 情報를 個人情報閱覽簿 또는 官報에 기재하여 일반의 閱覽에 提供하는 것이 당해 事務의 적정한 수행을 현저하게 阻害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백히 하여 그 事項의 기재생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함에 있어서 第1項 第6號 및 第7號의 事項을 생략할 수 있다.

1. 犯罪의 豫防에 관한 事務
2. 出入國管理에 관한 事務
3. 租稅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事務
4. 그 밖에 第1號 내지 第3號의 事務에 준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務

(4) 第1案 第6條 第2項과 同

第7條[申告의 例外]

情報處理機關은 個人情報의 處理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情報處理機關의 日常的 利用 이외의

다른 目的으로 利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限한다.

1. 國家의 安全保障과 外交上의 秘密에 관련된 경우
2. 犯罪의 搜查 또는 租稅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의한 犯罪事件의 조사, 公訴의 提起 및 維持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당해 情報處理機關 소속원의 人事, 給與 또는 福利厚生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事項에 관련된 경우
4. 個人情報가 수집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廢棄될 것인 경우
5. 당해 個人情報處理의 대상이 되는 情報當事者의 範圍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數 이하인 경우
6. 그 밖에 第1號 내지 第5號에 준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

[第2案]

第7條[申告의 例外] 第1案 第7條와 同

第8條[申告事項의 送付 및 登錄]

- (1) 主務官廳의 長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遞信部長官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 (2) 主務官廳의 長은 第14條 第1項, 第2項 本文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承認을 하거나 그 承認을 取消한 때 또는 第14條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遞信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 (3) 遞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送付받은 事項을 個人情報處理登錄簿(이하 “登錄簿”라 한다)에 登錄하여 管理하여야 한다.

[第2案]

第8條[申告事項의 送付 및 登錄]

- (1) 第1案 第8條 第1項과 同
- (2) 主務官廳의 長은 第14條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承認을 하거나 그 承認을 取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遞信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3) 第1案 第8條 第3項과 同

第9條 [個人情報閱覽簿의 作成 및 公示 등]

- (1) 遞信部長官은 登錄簿에 登錄된 事項 중 第6條 第1項 第1號 내지 第6號의 事項과 第21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行政機關의 名稱을 기재한 個人情報閱覽簿(이하 “閱覽簿”라 한다)를 매년 1회 이상 발간하여 一般의 閱覽에 提供하여야 한다. 다만, 登錄된 事項이 第6條 第3項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遞信部長官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閱覽簿를 발간한 이후에 登錄簿에 登錄된 個人情報處理事項을 수시로 官報에 게재하여 公示하여야 한다.
- (3) 遞信部長官은 總務處長官과 협의하여 情報當事者가 閱覽簿 및 官報의 閱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第2案]

第9條 [個人情報閱覽簿의 作成 및 公示 등]

- (1) 遞信部長官은 登錄簿에 登錄된 事項 중 第6條 第1項 第1號 내지 第5號의 事項과 第20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行政機關의 名稱을 기재한 個人情報閱覽簿(이하 “閱覽簿”라 한다)를 매년 1회 이상 발간하여 一般의 閱覽에 提供하여야 한다. 다만, 登錄된 事項이 第6條 第3項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第1案 第9條 第2項과 同
- (3) 第1案 第9條 第3項과 同

第2節 個人情報의 處理와 그 制限

第10條 [通則]

- (1) 情報處理機關은 第8條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個人情報의 處理에 관한 事項이 登錄된 경우에 限하여 個人情報를 處理할 수 있다.

(2) 情報處理機關에 의한 個人情報의 蒐集은 情報當事者로부터 直接 行함을 原則으로 한다.

(3) 情報處理機關에 의하여 處理되는 個人정보는 당해 情報處理機關의 所管業務遂行의 目的에 적합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目的의 달성에 필요한 期間 이상 保有하여서는 아니된다.

(4) 情報處理機關은 個人정보를 保有·利用함에 있어서 그 範圍 및 內容이 登錄簿에 登錄된 事項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個人정보의 處理目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現在의 正確한 事實의 內容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5) 情報處理機關은 個人정보의 불법·부당한 流出, 滅失, 毀損 및 變造를 防止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行政的·技術的인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第2案]

第10條 [通則] 第1案 第10條와 同

第11條 [記錄의 制限]

個人的 政治的·哲學的인 信念과 勞動組合加入與否 및 그 活動事項은 本人의 書面에 의한 同意가 없는 한 어떠한 이유로도 電子的自動處理裝置에 의하여 記錄할 수 없다.

[第2案]

第11條 [記錄의 制限] 第1案 第11條와 同

第12條 [提供 등]

(1) 情報處理機關은 法律의 규정 또는 情報當事者의 同意가 있거나 당해 機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日常的으로 利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登錄簿에 登錄된 目的과 다른 目的으로 個人정보를 利用하거나 國內 또는 國外的 다른 者에게 提供 또는 移轉할 수 없다.

(2) 情報處理機關은 法律의 규정이나 情報當事者의 同意에 의하여 登錄簿에 登錄된 目的 이외의 다른 目的으로 個人정보를 利用하거나 國內 또는 國外的 다른 者에게

提供 또는 移轉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記錄을 保存하여야 한다. 이 경우 保存期間은 당해 文書를 廢棄한 때로부터 5년 이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으로 한다.

1. 個人情報 開示의 日字, 目的 및 開示範圍
2. 開示를 받은 者 또는 機關의 명칭 및 주소
3. 開示를 행한 者의 성명

[第 2 案]

第12條[提供 등] 第1案 第12條와 同

第13條[委託處理]

情報處理機關으로부터 個人情報의 處理를 委託받은 者는 당해 情報處理機關의 所屬職員으로 보며 情報處理機關이 그의 行爲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다만, 情報處理機關이 그 선임·감독에 있어서 故意 또는 過失이 없음을 立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2 案]

第13條[委託處理] 第1案 第13條와 同

第14條[個人情報의 國外移轉 등]

- (1) 情報處理機關이 個人정보를 國外的 다른 國家機關 등에 提供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主務官廳의 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 (2) 情報處理機關이 國外的 個人이나 團體 등에 個人정보의 處理를 委託하거나 國外的 個人이나 團體 등의 協助를 얻어 個人정보를 處理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主務官廳의 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民間情報處理機關은 主務官廳의 長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
- (3) 主務官廳의 長은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個人정보의 外國에의 移轉 및 國外處理가 個人的 秘密,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그 밖에 重大한 國家利益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承認을 拒否하거나 承認을 取消할 수 있다.

- (4) 遞信部長官은 第3項에 規定된 事由가 있는 때에는 主務官廳의 長에 대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承認의 取消 등을 勸告할 수 있다.

[第 2 案]

第14條[個人情報의 國外移轉 등]

- (1) 第1案 第14條 第1項과 同
- (2) 情報處理機關이 國外的 個人이나 團體 등에 個人정보의 處理를 委託하거나 國外的 個人이나 團體 등의 協助를 얻어 個人정보를 處理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主務官廳의 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 (3) 第1案 第14條 第3項과 同
- (4) 第1案 第14條 第4項과 同

第15條[個人的 權利保護 등]

- (1) 情報處理機關은 第2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當事者의 請求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그 請求에 대한 處理結果를 主務官廳의 長에게 每月 報告하여야 한다.
- (2) 情報處理機關의 長은 당해 機關에서의 個人정보의 處理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適正하게 이루어지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그 業務를 전달할 者를 둘 수 있다.

[第 2 案]

第15條[個人的 權利保護 등]

- (1) 情報處理機關은 第1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當事者의 請求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그 請求에 대한 處理結果를 主務官廳의 長에게 每月 報告하여야 한다.
- (2) 第1案 第15條 第2項과 同

第3節 監督

第16條 [主務官廳의 長의 權限]

- (1) 主務官廳의 長은 관할하에 있는 情報處理機關에 대하여 個人情報處理가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유지되도록 指導·監督한다.
- (2) 主務官廳의 長은 情報處理機關이 個人情報의 處理와 관련하여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을 위반한 때에는 是正 또는 中止를 命할 수 있다.
- (3) 主務官廳의 長은 訴訟과 관련하여 法院으로부터 특정 個人情報에 대한 調査 또는 鑑定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正當한 事由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調査 또는 鑑定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관련 個人정보의 提示를 해당 情報處理機關에 命할 수 있다.

[第2案]

第16條 [主務官廳의 長의 權限] 第1案 第16條와 同

第17條 [遞信部長官의 權限]

- (1) 遞信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事務를 管掌한다.
 1. 個人情報處理의 基準設定
 2. 登錄簿에의 登錄 및 管理
 3. 個人情報處理事項의 閱覽簿에의 기재 및 그 閱覽提供과 官報에의 게재
 4. 이 法의 運用狀況에 관한 大統領 및 國會에의 報告
 5. 個人情報處理에 관련된 制度의 發展을 위한 研究
 6.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項
- (2) 遞信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遂行에 필요한 경우에는 情報處理機關에 대하여 資料의 提出 및 說明을 요구할 수 있다.

[第2案]

第17條 [遞信部長官의 權限] 第1案 第17條와 同

第18條 [通報 및 報告]

- (1) 主務官廳의 長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監督 등의 結果와 第20條, 第22條 및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處理機關 또는 主務官廳의 長이 행한 情報當事者의 請求의 접수·처리결과를 每月 遞信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 (2) 遞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主務官廳의 長의 通報事項과 遞信部長官이 행한 業務結果를 종합하여 每年 大統領과 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2案]

第18條 [通報 및 報告]

- (1) 主務官廳의 長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監督 등의 結果와 第19條 및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處理機關 또는 主務官廳의 長이 행한 情報當事者의 請求의 접수·처리결과를 每月 遞信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 (2) 第1案 第18條 第2項과 同

第19條 [行政審判]

民間情報處理機關은 主務官廳의 長이 第16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發한 命令과 第14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承認拒否 또는 承認取消가 違法하거나 不當한 경우에는 行政審判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第2案] 해당 條文 없음.

第3章 情報當事者의 權利

第20條 [情報處理機關에 대한 權利]

- (1) 情報當事者는 閱覽簿 또는 官報에 기재된 個人情報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權利를 가진다.
 1. 情報處理機關이 保有한 個人情報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관한 質疑

2. 情報處理機關이 保有한 자신에 관한 個人情報의 閱覽 또는 寫本의 交付請求
3. 情報處理機關이 保有한 자신에 관한 個人情報가 부정확하거나 그 본래의 利用·保有의 目的과 期間을 일탈하여 處理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訂正 또는 抹消를 請求하거나 당해 個人情報의 處理中止 또는 廢棄의 請求

(2) 情報處理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 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拒否할 수 있다.

1. 제3자의 우월적 利益을 侵害하는 경우
2. 個人의 生命, 身體, 財産 그 밖의 利益을 害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統計記錄의 作成 및 調査의 實시를 위하여 處理하는 個人情報로서 그 結果가 情報當事者를 識別할 수 있는 形態로 다른 者에게 提供되지 아니하는 경우
4. 각종 試驗, 資格 등의 審査 또는 補償金이나 給與 등의 산정 및 평가에 관한 事務의 적절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個人情報가 第6條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事實을 登錄簿에 登錄한 경우
6. 동일한 文書에 대하여 당해 情報當事者가 1년 이내에 동일한 請求 등을 행한 事實이 있는 경우
7. 個人情報가 處理開示日로부터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期間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第1號 내지 第7號에 준하는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第2案]

第19條 [情報處理機關에 대한 權利] 第1案 第20條와 同

第21條 [權利行使節次 등]

- (1) 第2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 등은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情報當事者 本人이 관할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行政機關(이하 “市長·郡守·區廳長 등”이라 한다)을 거쳐 다음 事項을 기

재한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1. 情報當事者의 姓名과 주소. 다만, 代理人이 申請하는 경우에는 代理人의 姓名과 주소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 第6條 第1項 第1號 및 第2號의 事項
 3. 請求의 種類 및 請求內容
 4.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項
- (2) 市長·郡守·區廳長 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의 適格與否와 申請書의 形式的要件의 구비만을 審査한 후 이를 갖춘 경우에는 지체없이 申請書를 情報處理機關에 送付하여야 한다.
- (3) 情報處理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請書를 送付받은 경우에는 送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請求에 대한 決定을 하고 이를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請求를 拒否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법규 및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4) 情報處理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閱覽請求인 경우에는 閱覽日時와 閱覽場所를 申請人에게 書面으로 通知하되 申請人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5) 情報處理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받아 個人情報를 閱覽하게 하거나 寫本을 提供함에 있어서 同一性을 識別할 수 있는 他人에 관한 個人情報를 開示하지 아니하고는 情報當事者의 請求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他人의 명백한 同意가 없는 한 그 請求를 拒否하여야 한다. 다만, 同一性을 識別할 수 있는 事實의 生략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他人의 身元을 識別할 수 없는 상태에서 提供되어질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案]

第20條 [權利行使節次 등]

- (1) 第1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 등은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情報當事者 本人이 관할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行政機關(이하 “市長·郡守·區廳長 등”이라 한다)을 거쳐 다

음 事項을 기재한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1. 情報當事者の 성명과 주소. 다만, 代理人이 申請하는 경우에는 代理人의 성명과 주소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 第6條 第1項 第1號 및 第2號의 事項
3. 請求의 種類 및 請求內容
4.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項

(2) 第1案 第21條 第2項과 同

(3) 第1案 第21條 第3項과 同

(4) 第1案 第21條 第4項과 同

(5) 第1案 第21條 第5項과 同

第22條 [義務履行審判의 請求]

情報當事者는 第3條 第1號와 第2號의 情報處理機關이 第2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거부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行政審判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義務履行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第 2 案]

第21條 [義務履行審判의 請求]

情報當事者는 情報處理機關이 第1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거부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行政審判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義務履行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第23條 [調停申請]

- (1) 情報當事者는 民間情報處理機關이 第2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거부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主務官廳의 長에게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 (2) 主務官廳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審査하여 調停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 (3) 申請人과 民間情報處理機關은 調停의 決定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을 通知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行政審判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調停의 決定은 30일 이내에 行政審判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期間이 경과함으로써 確定된다.

[第 2 案] 해당 條文 없음.

第24條 [手數料]

情報當事者가 第2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定의 手數料를 納入하여야 한다.

[第 2 案]

第22條 [手數料]

情報當事者가 第1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定의 手數料를 納入하여야 한다.

第 4 章 補 則

第25條 [秘密遵守義務]

누구든지 이 法에 의한 業務遂行과 관련하여 知得한 個人情報를 正當한 事由없이 漏泄하거나 他人의 利用에 提供할 수 없다.

[第 2 案]

第23條 [秘密遵守義務] 第1案 第25條와 同

第26條 [注意規定]

이 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個人이나 團體가 個人情報를 處理하는 경우에는 個人情報의 保護를 위한 이 法의 規定에 준하는 適切한 措置를 講究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主務官廳의 長은 그러한 措置에 대하여 支援하여야 한다.

[第 2 案]

第24條[注意規定] 第1案 第26條와 同

第27條[大統領令에의 委任]

이 法의 施行에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 2 案]

第25條[大統領令에의 委任] 第1案 第27條와 同

第 5 章 罰 則

第28條[罰則]

第25條의 規定을 違反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 2 案]

第26條[罰則]

第23條의 規定을 違反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또는 虛僞로 申告한 者
2. 第11條의 規定을 違反한 者
3. 第12條 第1項과 第14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違反한 民間情報處理機關
4. 第23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된 決定에 따르지 아니한 者 또는 行政審判의 決定에 따르지 아니한 者

5. 虛僞 또는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2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행하여 個人情報를 開示받은 者

[第 2 案]

第27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1條의 規定을 違反한 者
2. 虛僞 또는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1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행하여 個人情報를 開示받은 者

第30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9條 第1項 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 2 案] 해당 條文 없음.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後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案] 第1案 附則 第1條와 同

第2條[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이전에 處理된 個人情報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월 이내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2) 第20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情報當事者의 權利는 이 法 施行後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行使할 수 있다.

[第 2 案]

第2條 [經過措置]

(1) 第1案 附則 第2條와 同

(2) 第19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情報當事者의 權利는 이 法 施行後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行使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國內文獻

1. 姜京根, 『情報公開制度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 法學博士學位論文, 1984.
2. 丘秉朔, 「情報化社會와 人權」, 『考試研究』, 1979. 5.
3. 權寧高, 「프라이버시의 權利에 관한 小考」, 『憲法研究』, 第4輯, 1979.
4. 金昞默·尹明善, 『人權과 歷史』, 서울: 螢雪出版社, 1987.
5. 金伊烈, 「美聯邦 프라이버시法の 概要」, 『法政』, 1976. 3.
6. 金哲洙, 「알 權利와 프라이버시와의 關係」〈上〉, 〈下〉, 『法政』, 1975. 8, 9.
7. _____, 「프라이버시의 權利」, 『考試研究』, 1979. 6.
8. 法制處, 『各國의 個人情報保護關係法』, 法制資料 第150輯, 1989.
9. 卞在玉, 「情報化社會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의 權利」, 『栗山韓泰淵博士回甲紀念 論文集』, 1977. 9.
10. _____, 『情報化社會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權利』, 서울大學校 法學博士學位論文, 1978.
11. _____, 「美國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保護立法에 관한 考察」, 『海巖文鴻柱博士 華甲紀念論文集』, 1978.
12. _____, 「西獨에 있어서의 個人資料保護法 概觀」, 『嶺南大論文集』, 第12輯, 1978.
13. _____, 「盜聽과 프라이버시의 權利」, 『憲法研究』, 第4輯, 1979.
14. _____, 「美國의 情報自由法の 運用上 問題點」, 『現代公法の 理論』(牧村金道昶博士 華甲紀念論文集), 1982.
15. 宋相現, 『컴퓨터안전과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 韓國科學財團, 1988. 11.
16. 尹明善, 「The Right to Privacy v. the Right of the Press : On Balancing of the Two Conflicting Interests」, 『慶熙法學』, 第18卷 第1號, 1983. 9.

17. 李璟浩, 『情報化社會에 있어서 프라이버시權의 保護』, 東國大學校 法學博士 學位論文, 1986.
18. 電算網調整委員會, 『國家基幹電算網基本計劃』, 1989. 1.
19. 通信開發研究院, 『情報社會와 프라이버시(紀念學術大會)』, 서울, 1989. 6.
20. _____, 『通信政策動向』, 서울, 88년 겨울호, 1988
21. 通信政策研究所, 『世界の 프라이버시法』, 서울, 1987.
22. _____, 『通信政策動向』, 서울, 87년 가을호, 1987.
23. 韓國公法學會, 『未來 情報化社會에 對한 公法的 對應('87電氣通信學術研究課題)』, 서울, 1987. 12.
24. _____, 『未來 情報化社會의 公法的 對應(國際學術大會)』, 서울, 1989. 5. 26.
25. 韓國情報科學會, 『開放化 社會와 프라이버시(第7會 情報産業리뷰)』, 서울, 1988. 11. 18.
26. 韓國情報産業聯合會, 『프라이버시 保護實態와 對策(情報産聯심포지움)』, 서울, 1988. 10. 27.
27. 韓國刑事法學會, 『컴퓨터 犯罪에 관한 比較法的·立法論的 研究('88電氣通信學術研究 課題)』, 서울, 1988. 12.

國外文獻

28. 榎原 猛, 『表現權利論の新展開』, 京都: 法律文化社, 1982.
29. 堀部政男, 『情報化時代のプライバシー保護』, 『ジュリスト』, 第707號, 1980. 1. 1.
30. _____, 『イギリスにおける最近のプライバシー保護論』, 『ジュリスト』, 第760號, 1982. 3. 1.
31. _____, 『情報公開とプライバシー保護』(上), (中), (下), 『法律時報』, 第56卷 第9, 10, 11號, 1984. 9, 10, 11.
32. 石村善治 編, 『情報公開—その原理と展望』, 京都: 法律文化社, 1983.

33. 松本淳一郎, 『スウェデンにおけるプライバシー保護の最近の動向』, 『ジュリスト』, 第760號, 1982. 3. 1.
34. 鈴木庸夫, 『行政における情報管理と國民の權利』, 『ジュリスト』, 第859號, 1986. 5. 1.
35. 林 修三, 『國の行政機關等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 『ジュリスト』, 第879號, 1987. 3. 1.
36. 苧坂和邦, 『プライバシー保護法制定に關する最近の諸外國の動向』, 『ジュリスト』, 第760號, 1982. 3. 1.
37. 田中靖政, 『情報化時代の政府』, 『ジュリスト』, 第707號, 1980. 1. 1.
38. _____, 『個人データの處理に伴うプライバシー保護對策』, 『ジュリスト』, 第775號, 1982. 10. 1.
39. 佐藤幸治, 『情報化社會の進展と現代立憲主義』, 『ジュリスト』, 第707號, 1980. 1. 1.
40. 播磨良承・高橋秀和, 『データベースと情報化社會』, 『情報社會 1=2』, 近畿大學 産業・法律情報研究所, 1986=1987.
41. 阪本昌成, 『プライバシー保護法と情報公開法』, 『法律時報』, 第52卷 第4號, 1980. 4.
42. _____, 『プライバシー權論』, 東京: 日本評論社, 1986.
43. 平松 毅, 『情報公開』, 東京: 有斐閣, 1983.
44. 情報公開・プライバシー, 『ジュリスト』, 第742號, 1981. 6. 5, 臨時増刊.
45. 情報公開・プライバシーと法, 『ジュリスト』, 第854號, 1986. 2. 15.
46. 情報公開と情報管理, 『法律時報』, 第57卷 第3號, 1985. 2.
47. Anderson, Stanley V., "Public Access to Government Files in Sweden", 21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419, 1973.
48. Barker, Lucius J. and Twiley W. Barker, Jr., Civil Liberties and the Constitu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8.

49. Breckenridge, Adam C., The Right to Privacy,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1970.
50. Brigham, John, Civil Liberties and American Democracy, Washington D. C. : A Division of Congressional Quarterly Inc., 1984.
51. Cortner, Richard C., The Supreme Court and Civil Liberties Policy, Palo Alto : Mayfield Publishing Company, 1975.
52. Dixon, Robert G., "The Griswold Penumbra : Constitutional Charter for an Expanded Law of Privacy ?", 64 Michigan Law Journal 197, 1965.
53. _____, The Right of Privacy, New York : DaCapo Press, 1971.
54. Fried, Charles, "Privacy", 77 The Yale Law Journal 475, 1968.
55. Gavison, Ruth, "Privacy and the Limits of Law", 89 The Yale Law Journal 421, 1980.
56. Hayden, Trudy & Jack Novik, Your Rights to Privacy, New York : Avon Book, 1980.
57. Lahav, Pinna (ed.), Press Law in Modern Democracies : A Comparative Study, New York : Longman, 1985.
58. Miller, Arther R., The Assault on Privacy : Computers, Data Banks, and Dossiers, Ann Arbor :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71.
59. Note, "Computerization of Government Files", 15 UCLA Law Review 1377, 1968.
60. _____, "Government Information and the Rights of Citizens", 73 Michigan Law Review 971, 1975.
61. O'Brien, David M., "Freedom of Information, Privacy, and Information Control : A Contemporary Administrative Dilemma", 39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3, 1979.
62. _____, "Privacy and the Right of Access : Purposes and Para-

- doxes of Information Control", 30 Administrative Law Review 45, 1978.
63. _____, Privacy, Law, and Public Policy, New York : Prager, 1979.
64. Pember, Don R., Privacy and the Press, 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2.
65. Pionisopoulos, P. Allan and Craig R. Ducat, The Right to Privacy, St. Paul : West Publishing Co., 1976.
66. Pratt, Walter F., Privacy in Britain, London : Associated University Press, 1979.
67. Pritchett, C. Herman, Constitutional Civil Liberties, Englewood Cliffs : Prentice - Hall, 1984.
68. Rubinfeld, Jed, "The Right of Privacy", 102 Harvard Law Review 733, 1989.
69. Rule, James, Douglas McAdam · Linda Steans and David Uglow, The Politics of Privacy, New York : A Mentor Book, 1980.
70. Schoeman, Ferdinand D., Philosophical Dimensions of Privacy : An Antholog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71. Shapiro, Andrew O., Media Access,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y, 1976.
72. Shattuck, John H.F., Right of Privacy, New York : National Textbook Co., 1977.
73. Smith, Robert E., Privacy : How to Protect, What's Left of It?, New York : Anchor Press, 1979.
74. Soden, James R., Privacy, Boston : Allyn and Bacon Inc., 1977.
75. Tribe, Lawrence H., "The Supreme Court 1972 Term - Foreward : Toward a Model of Roles in the Due Process of Life and Law", 87 Harvard Law Review

1, 1973.

76. _____, American Constitutional Law, Mineola : The Foundation Press, Inc., 1978.

77. Wacks, Raymond, The Protection of Privacy, London : Sweet & Maxwell, 1980.

78. Westin, Alan F., Privacy and Freedom, New York : Atheneum, 1967.

이책은 체신부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지원으로 이루어진것입니다.

45.12.7